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디지털 성폭력이란?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 ↳ 자신의 몸과 성적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여 이미지로 소비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준강간,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

-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 재유포의 위험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 피해자 비난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가 더욱 악화됩니다.
-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디지털 성폭력, 한눈에 보기

• 디지털 성폭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유형	적용 법률	성격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직접 촬영형 •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촬영(소위 몰래 카메라) • (신체 일부)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행위) 용변 보는 행위, 성 행위 등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 동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로더(헤비업로더 포함) • SNS 단체대화방, SNS,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 • 보복성 유포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 포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 등과 함께 유포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 게임 내 성희롱 •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가 체크리스트)

- 강간이나 추행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은 심각한 피해가 아닌 것 같다.
- 가해자는 단순히 호기심이거나 장난이었을 수 있다.
- 피해자의 행실이 피해를 자초한 면도 있다.
- 피해자가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 사건 이후 당당하거나 밝은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는 ‘진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피해자가 다른 의도가 있어 피해를 고소·폭로할 수도 있다.
-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연애나 결혼이 가능할까’ 걱정된다.
- 법적·제도적 해결만이 사건의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 성폭력 피해는 어쨌든 숨기는 것이 낫다.
- 피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테니, 내가 주도하여 나서야 한다.

↳ 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 문항이라도 체크를 하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에 기반한 인식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미래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같은 말과 태도는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을 방해하고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예방과 대응을 위한 나의 역할

-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색하게 만들기
- 피해 사실인지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학내 성평등상담소 등에 도움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참여, 기부를 통해 힘 실어주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안내

- 지원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 피해 유포물 삭제 지원
 - 유포 의심 이미지 및 영상을 토대로 유포 가능성 있는 사이트 등 모니터링
 - 성폭력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 운영 안내
 - 전화 : 02-735-8994 (평일 10시~17시)
 - 게시판 : www.women1366.kr/spotds
 - 팩스 : 02-6363-9356
 - 메일 : stopds@stop.or.kr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이용 안내

- 하는 일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 폭력예방교육
 - 성평등문화캠페인

- 이용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 전화 : 219-1739, 1745
- 이메일 : help@ajou.ac.kr
- 홈페이지 : <http://help.ajou.ac.kr>
- 위치 : 신학생회관 418호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주제별 1회(1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방법 :

1. 아주대학교 포털에 로그인 합니다.
2. 포털 하단 주요서비스에서 인권/성평등교육을 클릭합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equalityclass.ajou.ac.kr 직접 입력하여 접속 가능)
3. 해당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수강합니다. (영어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 우측 상단 [ENG]를 클릭합니다.)
 -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학부생/대학원생) 필수 교육과정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4. 수강 완료한 과목에 대하여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본인 보관)

※ 시스템 오류, 접속장애 문의 : (주)아이엠지테크 070-8633-1122 (평일 10:00~18:00)

* 출처 :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